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4월 7일, 소병훈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8.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8. 19.)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8.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소병훈 의원)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임.

또한, 현행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지원 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현행 실태조사는 여성 노숙인에 대한 실태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현행법 제9조에서 노숙인 등의 현황·욕구 및 심리와 더불어 ‘노숙인 등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성 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 서비스 실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여성 거리노숙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전체 노숙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이 여성 노숙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결하고, 특히 시설을 통해 보호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의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단축은 현행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는 종합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과 시

행규칙을 통해 수시 실태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실태조사 주기는 현행대로 5년으로 하고, 실태조사의 내용에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부칙의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부대의견

없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8.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개정안은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종합계획 수립 주기(5년)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를 현행(5년)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9조제1항).

수정주요내용

- 가. 실태조사의 주기를 현행대로 5년으로 함(안 제9조제1항).
- 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를 2026년에 실시하도록 한 적용례를 삭제함(안 부칙 제2조 삭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3년”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5년”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u>등의 실태조사에</u> <u>관한 적용례) 제9</u> <u>조의 개정규정에</u> <u>따른 최초의 실태</u> <u>조사는 2026년에</u> <u>실시한다.</u>	
--	--	--

법률 제 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여성노숙인 등의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욕 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 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 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9조(실태조사) ① ----- ----- ----- ----- ----- ----- -----. <u>이 경우 여성노숙인 등의 보호</u> <u>와 관련된 노숙인시설에 대한</u> <u>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
② · ③ (생 략)	② · ③ (개정안과 같음)